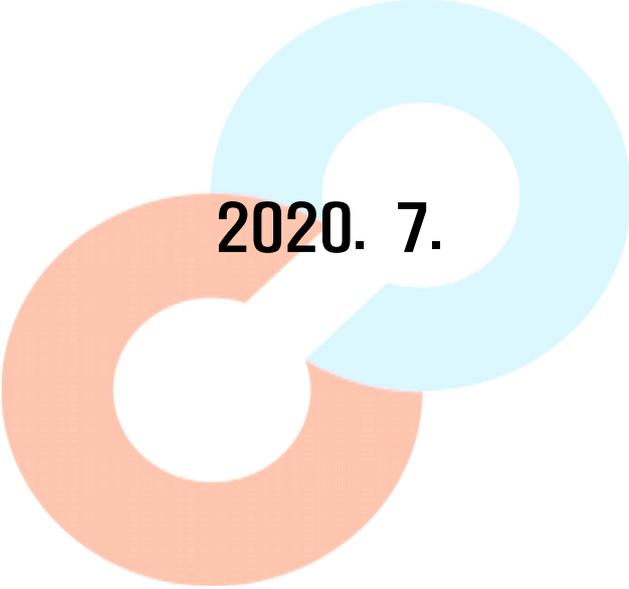


소비생활에 가치와 신뢰를 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

# 구명복 안전실태조사

---



2020. 7.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 □ 목 차 □

I. 조사 개요 .....	01
II. 일반 현황 .....	03
1. 구명복 .....	03
2. 수영보조용품 .....	06
3. 관련 규정 .....	07
III. 조사결과 .....	19
1. 설문조사 .....	19
가. 구입경험 .....	19
나. 구입 구명복의 적절성 .....	22
다. 구명복에 대한 인식 .....	26
2. 온라인 광고 실태 .....	28
가. 구명복 광고 유형 .....	28
나. 안전인증 품목별 안전정보 제공 현황 .....	31
다. 어린이용 구명복 광고 유형 .....	36
라. 구명복 선택정보 제공 현황 .....	38
마. 결과 요약 .....	39
3. 시험검사 .....	40
IV.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1
V. 조치계획 .....	45

# I. 조사 개요

## 1 배경 및 목적

- 여름철이면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장·계곡 등을 비롯해 워터파크·수영장 등과 같은 인공시설에서 다양한 물놀이를 즐기고 있음.
-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물놀이의 특성상 관련 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사망자수는 165명에 달함<sup>1)</sup>.

[연도별 물놀이 안전사고(사망)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사망자	24	36	35	37	33	165

- 물놀이 또는 레저 활동 시 익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개인용 부양기구(이하 구명복)’가 판매되고 있음.
- 착용자의 몸무게·수영능력 및 사용 장소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구명복을 착용해야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서는 구명복의 성능에 따라 용도를 구분하고 있음.

[ 구명복 유형 ]



- 현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구명복은 부력보조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용도 등을 명시하지 않고 ‘구명조끼’라는 명칭으로만 광고·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오사용 우려가 높은 실정임.

1) 2019 행정안전통계 연보(행정안전부)

- 부력보조복은 충분한 부력(최소부력 50N)이 없기 때문에 수영을 할 수 없는 사람이 급류나 높은 파도가 치는 장소 또는 보호시설이 없는 곳에서 사용할 경우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움.
  - 이와 같은 이유로 체중 30kg 이하 어린이에게는 부력보조복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부력보조복 또는 수영보조용품으로 인증받은 ‘어린이용물놀이기구’를 어린이용 구명복으로 판매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임.
- 이에 구명복의 안전성, 판매실태 및 소비자 인식조사 등을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유통차단 및 시정조치, 제도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 안전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2 조사 내용 및 방법

조사 내용	조사 방법
• 국·내외 안전기준 검토	문헌조사
• 구명복 및 어린이용물놀이기구(수영보조용품) 온라인 유통(광고) 실태 - 유형별 용도 및 부력 등 안전정보 제공 여부	실태조사
• 구명복 및 어린이용물놀이기구(수영보조용품) 안전의식 조사 - 구명복 이용경험, 관련 정보 인지 여부 등	설문조사
• 부력 등 안전기준 적합시험	시험검사 (국가기술표준원)

## 3 조사기간 및 조사자

- 조사기간 : 2020. 4. ~ 7.(3.5개월)
- 조사자 : 서영호 차장(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 II. 일반 현황

### 1 구명복(Life-jackets)

- (정의) 구명복이란 스포츠 및 레저활동 시 익사방지 등 물 속에서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착용하는 의복형태의 제품을 말함.
- (구명복의 종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 기준에서는 스포츠용 구명복과 부력보조복으로 구분하고 있음.
  - (스포츠용 구명복) 구명복 중에서 부력이 높아 수영을 못 하는 사람도 보호시설이 있는 물(A형) 또는 악천후 조건(B형)에서 사용이 가능한 구명복으로 긴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의 얼굴을 물 밖으로 향하게 하는 회전 기능이 있음.
  - (부력보조복) 스포츠용 구명복에 비해 부피와 부력이 작아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호시설이 인접해 있는 조건에서 사용하는 구명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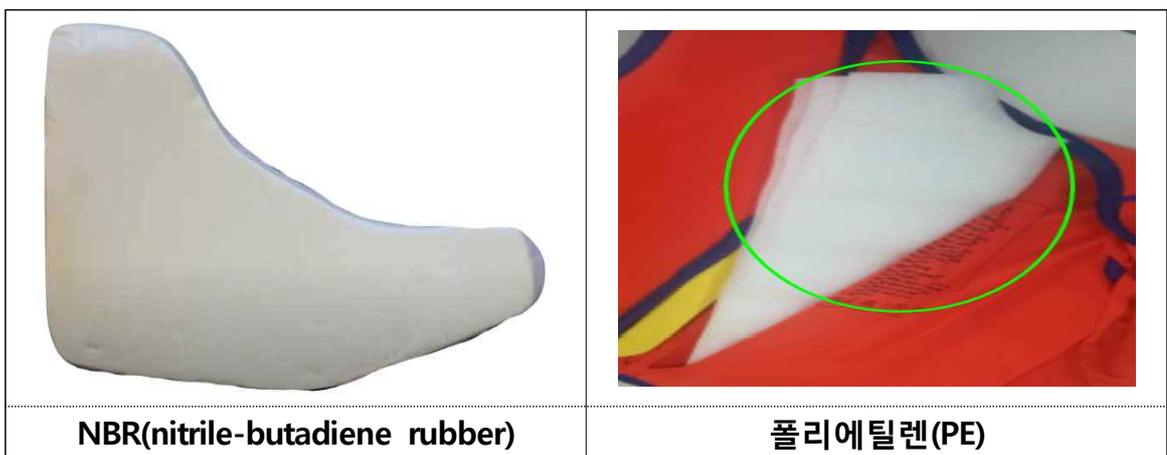
#### [스포츠용 구명복과 수영보조용품 비교]

 <p>* 역반사체 및 호루라기 등 구조용품 부착</p> <p><b>스포츠용 구명복</b></p>	 <p>*역반사체 및 호루라기 없음.</p> <p><b>부력보조복</b></p>
--	---

※ 상기 구명복 외에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에 비치하는 구명복은 본 보고서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부력에 따른 분류)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구명복의 부력에 따라 사용장소 및 안전성능 등을 분류하고 있음(ISO 12402-5).
  - (레벨50) 수영에 능한 사람이 해안 가까이에서 사용하거나 근처에 구조수단이 있는 경우에 착용하는 구명복으로 스스로 자신을 구조할 수 없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함.
  - (레벨100) 보호수역 내에서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 사람이 착용하는 구명복으로 악천후 조건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 (레벨150) 의식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수면 위로 향하게 하고 사용자의 별도 행동이 없어도 안전하게 떠있을 수 있음.
  - (레벨275) 대양 항해 등 극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구명복으로 항상 사용자의 얼굴이 수면 위로 향하도록 설계됨.
- (부력재에 따른 분류) 사용되는 부력재에 따라 고체식, 팽창식 및 혼용식으로 분류됨.
  - (고체식) NBR, 폴리에틸렌 등 고체식 부력재를 사용함에 따라 부력재의 비중이 물보다 가벼워 물에 뜨는 원리를 이용한 구명복을 말함.

**[고체식 부력재]**



- (팽창식) 물에 빠졌을 때 자동 또는 구강으로 공기유닛에 가스(CO<sub>2</sub>) 및 공기를 주입하여 부력을 유지하는 구명복을 말함.

**[팽창식 구명복 주요 부품 및 작동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플레이터가 수면아래 10cm이상 잠기면 수압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하고 10초 이내에 공기유닛이 팽창됨.</li> <li>•카트리지는 압축 스프링이 들어있으며 카트리지가 젖으면 스프링이 자동으로 풀려 가스실린더를 뚫음과 동시에 안전핀이 빠짐.</li> </ul>	
<p><b>CO<sub>2</sub> 실린더 및 인플레이터 구조</b></p>	<p><b>(작동원리)</b></p>	<p><b>팽창한 공기유닛</b></p>

- (혼용식) 팽창식과 고체식이 결합한 형태로 고체식의 부력 한계를 극복하여 높은 부력을 얻을 수 있는 구명복을 말함.

2

수영보조용품(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 (정의) 어린이가 물놀이 또는 수영을 배울 때 부양을 도와 물에 익숙해지게 하거나 수영 동작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된 제품을 말함.
- 수영장과 같이 물의 흐름이 없는 장소에서 보호자의 감독 하에 사용해야 하며, 착용형은 구명복과 유사한 모양이나 물에서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 아님.

[구명복과 수영보조용품 비교]



□ 수영보조용품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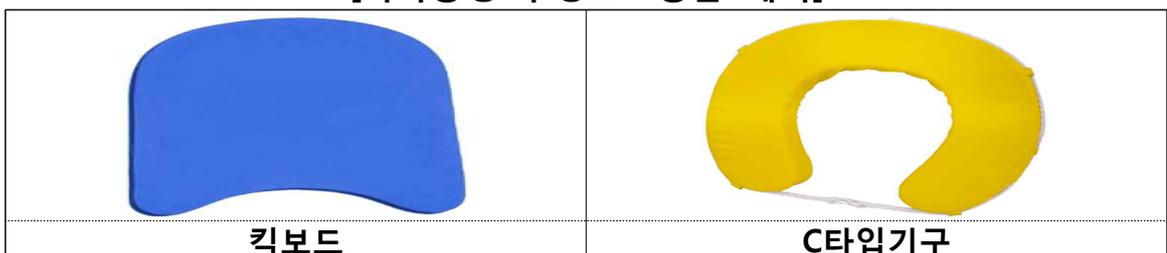
- (착용형) 의복과 같이 입거나 목·팔·가슴 등 신체 일부에 고정하여 사용하는 제품을 말함.

[착용형 수영보조용품 위치]



- (비착용형) 수영동작 개선을 위해 손으로 잡거나 몸이나 다리사이에 끼워서 사용하는 제품을 말하며 킥보드, C타입기구 등이 있음.

[비착용형 수영보조용품 예시]



## 가. 국내기준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스포츠용 구명복(부력보조복 포함)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됨.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032호(2017.2.8.)

- (부력기준) 착용자의 체중에 따라 최소 부력 이상의 부력을 제공하여야 함.

- 모든 제품의 부력은 24시간 이상 유지( $\pm 5\%$  이내)되어야 하며, 팽창식의 경우 공기유니트는 일정 기준의 내부 공기압(3.5kPa\*)을 12시간 동안 유지시켰을 때 압력손실(0.25kPa\* 미만)이 있어서는 안 됨.

\* 1kPa는 물속 0.1m 깊이의 수압과 같음.

- 체중이 30kg 이하인 사람에게 부력보조복을 공급하지 않아야 함.

[부력보조복 및 스포츠용 구명복의 최소 부력 기준]

착용자 체중(kg)	부력보조복	스포츠용 구명복	
		A형*	B형**
20이하	-	30	45
20초과 ~ 30이하	-	40	60
30초과 ~ 40이하	35	50	75
40초과 ~ 50이하	40	60	90
50초과 ~ 60이하	40	70	110
60초과 ~ 70이하	45	80	130
70초과	50	100	150

\* 스포츠용 구명복(A형) :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보호시설이 있는 물에서 사용 가능한 구명복

\*\* 스포츠용 구명복(B형) :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악천후 조건에서 사용이 가능한 구명복

○ 수면에서의 성능

- (스포츠용 구명복) 긴장을 하지 않고 있는 착용자의 얼굴이 물결이 없는 수면 위로 확실히 보일 수 있도록 머리의 측면과 후두부를 받쳐 주어야 하고, 착용자 몸통 뒷부분이 수직으로부터 30° 에서 90° 범위의 각도로 기울어진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회전기능) 스포츠용 구명복 A형은 10초 이내, B형은 5초 이내에 착용자의 얼굴이 수면 위로 향하여야 함.
- (부력보조복) 착용자의 몸통이 거의 수직인 상태 또는 등 뒤로 약간 기울어진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수직으로부터 가슴 쪽으로 기울려는 경향이 없어야 함.

○ 구조용품

- (스포츠용 구명복) 역반사체, 호루라기, 밧줄고리 등 구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부속품이 부착되어 있어야함.

[구조용품 부착 기준]

구조용품	주요 내용
역반사체 (A형/B형)	- 사용 중 수면 위로 노출되는 표면에 부착하여야 함. · (최소면적) A형 100cm <sup>2</sup> , B형 300cm <sup>2</sup>
호루라기 (A형/B형)	- 물이나 습기로 인해 변형이 없어야 함. - 구명복에 견고하게 줄로 연결하고, 물에서 입에 가져가기 용이한 위치여야 함.
밧줄고리 (B형)	- 부식에 저항성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함. - 손으로 잡거나 들어올리는 장치에 부착하기가 용이해야 함. - 가슴 가운데 부분에 위치해야 함. - 폭이 최소한 20mm이상 되어야 하고 구명복의 색상과 뚜렷이 대비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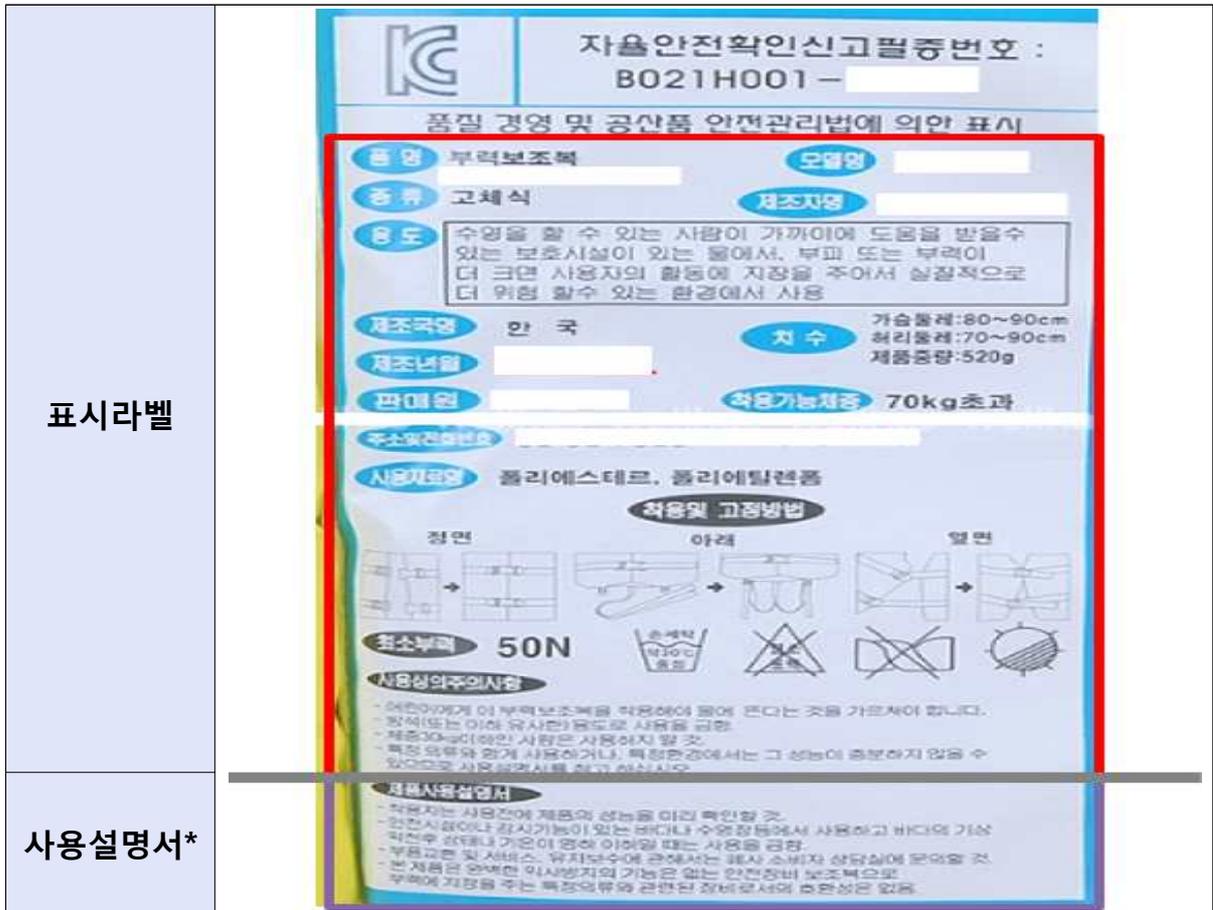
- (부력보조복) 구조용품 부착 의무가 없음.

- (표시사항) 스포츠용 구명복 및 부력보조복에는 한글로 된 표시라벨 및 사용설명서가 있어야 함.

[스포츠용 구명복·부력보조복 표시라벨 및 사용설명서]

<b>라벨 표시 항목</b>	<p>① 용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th>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80%;">용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스포츠용</td> <td style="text-align: center;">A형</td> <td>보호시설이 있는 물에서 사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구명복</td> <td style="text-align: center;">B형</td> <td>해변가 또는 악천후에 사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부력보조복</td> <td></td> <td>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호시설이 있는 물에서, 부피 또는 부력이 더 크면 사용자의 활동에 지장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더 위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사용</td> </tr> </tbody> </table> <p>② 모델명 및 제조연월</p> <p>③ 제조자·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p> <p>④ 치수표시(가슴둘레, 허리둘레, 제품중량 등)</p> <p>⑤ 간단한 착용 및 고정방법</p> <p>⑥ 팽창식인 경우 사용기간과 유효기간</p> <p>⑦ 취급표시(보관, 세탁방법 등)</p> <p>⑧ 착용가능 체중 및 최소부력</p> <p>⑨ 사용상 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석(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 금지” 표시</li> <li>- 팽창식인 경우 충분히 팽창될 때까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설명</li> <li>- “특정 의류와 함께 사용하거나, 특정 환경에서는 그 성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표시</li> <li>- (부력보조복) “체중 30kg 이하인 사람은 사용하지 말 것” 표시</li> </ul>		구분	용도	스포츠용	A형	보호시설이 있는 물에서 사용	구명복	B형	해변가 또는 악천후에 사용	부력보조복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호시설이 있는 물에서, 부피 또는 부력이 더 크면 사용자의 활동에 지장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더 위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사용
		구분	용도										
스포츠용	A형	보호시설이 있는 물에서 사용											
구명복	B형	해변가 또는 악천후에 사용											
부력보조복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호시설이 있는 물에서, 부피 또는 부력이 더 크면 사용자의 활동에 지장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더 위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사용											
<b>사용 설명서 표시 항목</b>	<p>① 팽창식인 경우 충분히 팽창될 때까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설명</p> <p>② 착용자가 사용 전에 그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p> <p>③ 바다의 상태, 온도(기온)제한 등과 같은 사용상의 적절한 제한사항</p> <p>④ 교환부품 및 교체방법과 서비스와 유지보수 설명, 포장방법에 관한 설명 등</p> <p>⑤ 안전장비 및 기타의류와 관련된 장비로써의 호환성</p>												

[표시라벨 및 사용설명서 예시]



\* 국내 유통되는 구명복은 사용설명서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표시라벨에 함께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수영장 등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수영을 배울 때 부양을 도울 목적으로 사용하는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수영보조용품)는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됨.
- (~~부력기준-외피부분~~) 착용자의 연령 및 체중별로 최소부력 이상의 부력을 제공해야함.

[수영보조용품-외피부분의 최소부력 기준]

연령	체중(kg)	최소부력(N)
2세 이하	15 이하	20
2세 초과~6세 이하	15 초과~25 이하	20
6세 초과~12세 이하	25 초과~50 이하	25
12세 초과	50 초과	30

- (표시사항 및 사용상 주의사항) 수영보조용품에는 한글로 된 표시라벨이 있어야 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을 포장상자 또는 동봉하는 설명서에 포함하고 있어야 함.

[수영보조용품 표시사항 및 사용상 주의사항]

<b>라벨 표시 항목</b>	<p>① 모델명 및 제조연월</p> <p>② 제조자·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p> <p>③ 사용연령 및 체중범위</p> <p>④ 공기를 넣은 보조용품의 경우 공기주입 밸브로부터 100 mm 이내의 거리에 경고사항 표시</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p>△ 경 고</p> <p>“익사 방지의 기능은 없음”</p> <p>“적절한 감시 하에서만 사용하십시오</p> <p>“몸에 정상적으로 착용하십시오”</p> <p>“팔의 위쪽에만 착용하십시오”</p> <p>(팔에 착용하는 기구에만 적용됨)</p> </div> <p>⑤ 수영보조용품(착용형)에서 DEHP, DBP, BBP, DINP, DIDP, DNOP의 총합이 0.1%를 초과한 제품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함. 예) “경고! 본 제품은 어린이가 입에 넣으면 몸에 해로울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p>																						
<b>사용상 주의 사항</b>	<p>① 공기를 주입하는 수영보조용품에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공기를 제거하는 방법, 잠금장치의 사용법</p> <p>② 수영보조용품을 사용하는 기능에 따라 착용하고 벗는 방법</p> <p>③ 보관 및 사후관리 절차</p> <p>④ 사용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설명</p> <p>⑤ 정보 및 경고사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수영강습을 위한 수영보조용품</th> <th rowspan="2">타입</th> <th colspan="4">체중 Kg</th> </tr> <tr> <th>15미만</th> <th>15 ~ 25</th> <th>25 ~ 50</th> <th>50초과</th> </tr> </thead> <tbody> <tr> <td>물놀이에 친숙해지는 기구(착용용)</td> <td>A</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수영 동작을 배우는 기구(착용용)</td> <td>B</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경고 : 익사 방지의 기능은 없음 적절한 감시 하에서만 사용할 것</p>	수영강습을 위한 수영보조용품	타입	체중 Kg				15미만	15 ~ 25	25 ~ 50	50초과	물놀이에 친숙해지는 기구(착용용)	A					수영 동작을 배우는 기구(착용용)	B				
수영강습을 위한 수영보조용품	타입			체중 Kg																			
		15미만	15 ~ 25	25 ~ 50	50초과																		
물놀이에 친숙해지는 기구(착용용)	A																						
수영 동작을 배우는 기구(착용용)	B																						

## 나. 해외기준

### □ 미국(연방규정 Part160.064 ; 인명구조장비-해양부양장치)

- 모든 구명복(Personal Flotation Device, PFD)은 미국 해안경비대(USCG)의 승인을 받은 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USCG는 UL12402-5(개인용 부양장치 표준) 등에 따라 구명복의 안전 및 표시 요구사항을 검사함.
- (부력에 따른 분류) 부력에 따라 구명복의 용도 등을 분류함.

#### [구명복 부력별 용도 분류]

구분	용도
Level 50 (50N)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운 곳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거나 구조 수단이 있는 경우에 사용 가능한 구명복으로, 사용자를 장시간 보호할 수 없고 사용자의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음.
Level 70 (70N)	가까운 곳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거나 구조 수단이 있는 독이나 해안 근처에서 사용 가능한 구명복으로, 물속에서 장시간 안전을 기대할 수 없음.
Level 100 (100N)	보호수역 및 잔잔한 물에서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이 사용 가능한 구명복으로, 사용자의 얼굴이 수면 위를 향하도록 약간의 회전 기능이 있고 사용자의 적극적인 행동 없이도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음.
Level 150 (150N)	연안 및 거친 물에서 사용 가능한 구명복으로, 의식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수면 위로 향하도록 하는 회전 기능이 있고 사용자의 적극적인 행동 없이도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음.
Level 275 (275N)	악천후 및 해상에서 사용 가능한 구명복으로, 두꺼운 옷을 입고 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소지한 사람에게 유효하며, 의식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수면 위로 향하도록 하는 회전 기능이 있고 사용자의 적극적인 행동 없이도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음.

※ (참고) 미국은 2014년 구명복의 안전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캐나다 및 기타 국가간 기준 조화를 위해 성능유형(Type codes) 기준을 삭제함.

#### [구명복 성능유형별 용도 분류]

구분	성능 및 용도
Type I	가장 큰 부력을 가지고 있으며, 의식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수면 아래에서 수면 위(하늘)를 향하도록 회전하여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임.
Type II	의식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수면 아래에서 수면 위를 향하도록 회전하는 기능이 있음.
Type III	의식이 있는 사람의 자세를 수직상태로 유지할 수 있으나 의식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수면 아래에서 수면 위로 향하도록 하는 회전 기능은 없음.
Type V	윈드서핑 또는 상업용 급류 래프팅과 같은 제한된 용도를 위해 승인된 제품으로 다른 활동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 (표시라벨) 소비자의 오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명복의 선택 및 경고 표시·인증 정보·사용상 주의사항 등 3가지 항목을 라벨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시라벨 예시]

선택 및 경고 표시

**일반 성인용**

사용자 체중 : >41 kg (>90 lbs)  
가슴 둘레 : 76~132 cm (30~52 in.)



- 착용하지 않으면 익사할 위험이 있음.
- 착용자를 띄울 수 있도록 단단히 고정시키고 적절하게 조정해야 함.

사용자와 사용환경에 맞는 장치를 선택하고 착용하십시오.  
사용설명서 및 태그에 있는 착용 및 관리에 대한 정보를 읽고 사용설명서 및 태그를 보관하십시오.

인증정보

회사명  
회사주소  
회사 홈페이지  
제조국

인증  
시험기관  
마크

인증 시험기관 및  
주소

USCG 승인번호  
성능유형(UL 1123 TYPE XX)

모델명  
Lot넘버

승인조건은 캐나다 교통국 또는 USCG  
규정을 준수하는 선박의 필수장비로서  
구명복 착용의 의무를 명시함

사용 및 관리방법

사용법 :  
모든 잠금 장치를 단단히 잠그고 몸  
에 꼭 맞게 조절하세요.

검사 :  
사용할 때마다 구명조끼를 검사하세요.  
만약 구명조끼가 풍화, 손상 또는  
부패의 징후를 보인다면 사용하지  
마세요.

관리 및 보관 :  
사용 후에는 완전히 건조하세요. 직사  
광선이 닿지 않는 건조하고 서늘한  
장소에 보관하세요.



- (선택설명서) 소비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 할 수 있도록 구명복 선택설명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음.
- 구명복 종류별 용도 및 성능(부력, 회전능력 등) 비교·제품 유형에 대한 정보(고체형, 팽창형, 혼합형 등)·사용상 제한사항 등

[구명복 선택설명서 예시]

**앞면**

원하는 장비를 선택하세요.

**제품 치수**

- 사용자 체중과 가슴둘레를 확인하세요.
- 체형에 따라 물에서 다르게 뜹니다.
- 잘 맞는 제품은 안전하고, 편안하며, 조절이 가능한 것입니다.

착용해 보세요

**성능**

- 숫자가 낮을수록 활동성이 크고 편안하며 대부분 사람들에게 적합한 부력을 제공합니다.
- 숫자가 높을수록 물속에서의 더 큰 부력과 회전력 및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50      70      100      150

← 해안가      잔잔한 파도      파도      약전후 →

← 구조시간 증가 →

⊘
↻

회전기능 없음      최대 회전력

활동과 사용환경을 고려하세요

**위험 관리**

- 보트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80% 이상이 부력장치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 이런 경우 대부분은 갑자기 배에서 물 밖으로 추락하거나 작은 보트가 뒤집힌 것입니다.
- 물속에서 첫 순간은 숙련된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위태롭습니다.
- 차가운 물의 충격은 숨을 차게하고, 근육 움직임의 손실과 수영 실패를 초래합니다.
- 오랜 시간 물속에서 있으려면 열을 보호해야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부양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부양장치가 생명을 구합니다

## 뒷면

### 디자인 유형

- 내장형 - 부력재가 안에 들어있습니다(상시 부력).
- 팽창형 - 활성화된 가스 용기가 기실을 팽창시킵니다.  
(팽창 전에는 부력이 없으며, 가스 용기 교체가 필요하고, 수동이면서 2차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혼합형 - 내장형과 팽창형의 조합된 형태입니다.  
(일부는 즉시 부양하고, 팽창했을 때 부력이 보충되며, 가스용기 교체가 필요합니다.)
- 특수 용도용 - 특정 조건을 위한 특별한 기능(안전색상, 벨트, 띠 등)과 부속품(호루라기, 조명, 반사경 등)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구명복은 착용해야만 기능을 합니다**

### 유지

- 시간이 지나면서 햇빛, 염분, 기름 및 곰팡이에 노출되면 장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공기 중에 건조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테스트하십시오.
- 팽창형은 교체, 재포장 및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침을 읽고 따르세요**

### 경고

- 구명복은 정확하고 안전하게 고정되어야 합니다.
- 일부 구명복은 수상스키, 급류 패들링, 견인 스포츠 또는 개인용 수상기기 같은 특정 활동이나 조건에 맞지 않게 설계되었습니다.



**사용제한에 대한 라벨을 확인하세요**

### 승인

- 운송, 사용 및 착용을 위한 연방, 주/도 및 지역의 요구사항을 확인하십시오.



US Coast Guard



Transport Canada

**구명복을 착용하세요**

- \* 자신과 가족 및 친구들에게 맞는 구명복 선택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www.XXXXX.com](http://www.XXXXX.com)'를 방문하세요.

○ (어린이용 구명복 설명서) 체중 25kg 이하용 구명복에는 어린이용 사용 설명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음.

- 구명복의 선택 · 구명복 착용법 · 구명복 사용방법 등

### [어린이용 구명복 설명서 예시]

## 어린이들의 개인용 부양기구에 대한 중요한 정보

### 경고

익사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인용 부양기구에 부착된 태그 및 라벨과 “안전 선택” 설명서에 있는 정보를 읽고 따르세요.

### 어린이에게 맞는 구명복을 선택하세요.

어린이용 구명복을 선택할 때 구명복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부력과 제한 사항이 있음을 인지하고, USCG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

### 어린이의 구명복이 제대로 맞는지 확인하세요.

어린이의 체중과 가슴둘레와 같이 사이즈에 맞는 구명복을 선택하세요. 어린이의 체중이 구명복에 표시된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구명복은 꼭 맞아야 하지만 너무 조여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성장을 고려해서 치수가 큰 구명복을 구매하지 마세요. 자녀가 구명복을 착용해보고 구명복의 어깨를 들어올려 치수가 적합한지 테스트 해보세요. 구명복의 어깨를 들어올렸을 때 어린이의 턱이나 귀가 구명복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면 구명복이 너무 큰 것입니다. 구명복을 안전하게 착용하기 위해 항상 다리끈을 사용하세요.

### 아이에게 구명복 사용법을 가르쳐주세요.

침착하게 얼굴이 위를 향하게 뜨는 자세는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트를 타기 전에 어린이가 바닥을 짚을 수 없는 수영장이나 얇은 물에서 안전하게 뜨는 법을 가르치세요. 특히 다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1. 자녀가 물속에서 침착하도록 가르치세요. 어린이들은 때때로 물속에 들어갔을 때 공황상태가 됩니다. 팔을 움직이고 다리를 발버둥치게 되면 안전하게 뜨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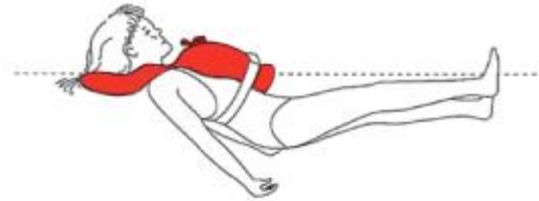
2. 자녀가 물 밖으로 얼굴을 내밀며 등으로 떠다닐 수 있는 자세를 배울 때까지 가르치세요(아래 그림 참조).

3. 어린이의 얼굴이 수면 아래를 향한 자세에서 수면 위를 향한 자세로 회전할 수 있도록 가르치세요. 어린이가 일관되고 확실하게 회전할 수 있다고 확신할 때까지 스스로를 돌리는 연습을 시키세요.

얼굴이 수면 위를 향한 자세



머리지지장치를 이용해 얼굴이 수면 위를 향한 자세



어린이가 구명복을 착용하는데 익숙해진 후에도 얼굴을 수면 위로 향하는 자세를 유지할 수 없다면 다른 유형의 구명복을 사용하세요.

**어린이가 항상 구명복을 착용하게 하세요.**

□ EU(개인보호장비 규정,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 EU PPE 기준이 지침(directive)에서 규정(regulation)으로 개정되면서 역사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장비 제품(구명복 등)은 위험범주(카테고리) ‘II’에서 ‘III’으로 상향조정됨(2018.4.21. 시행).
- PPE 규정은 개인보호장비의 위험범주를 3가지로 나누고 관련 제품의 제조업체가 CE마크 인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필수 안전조건 요건을 규정함.

[위험 카테고리 분류 기준 및 안전 요건]

구분	분류 기준	안전 요건
카테고리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한의 위험</li> <li>· 표면의 역학적 손상</li> <li>· 약한 작용의 세척 물질과의 접촉 또는 물과 장기간 접촉</li> <li>· 50°C를 초과하지 않는 뜨거운 표면과의 접촉</li> <li>· 햇빛 노출로 인한 눈의 손상(태양 관측 중 제외)</li> <li>· 심각하지 않은 대기 상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 생산 관리 절차 준수</li> <li>· 제품이 규정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제조사가 보장 및 선언</li> </ul>
카테고리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테고리 I 및 카테고리 III에 포함되지 않은 위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형식심사 절차 준수</li> <li>· 인증기관이 PPE의 기술설계를 심사하여 적합성을 평가</li> </ul>
카테고리 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 또는 돌이킬 수 없는 건강 손상과 같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li> <li>· 건강에 유해한 물질 및 혼합물</li> <li>· 산소가 부족한 대기</li> <li>· 유해 생물학적 물질</li> <li>· 이온화 방사선</li> <li>· 대기 온도가 100°C 이상인 고온 환경</li> <li>· 대기 온도가 -50°C 이하인 저온 환경</li> <li>· 높은 곳에서의 추락</li> <li>· 감전 및 감전위험이 있는 작업</li> <li>· <b>익사</b></li> <li>· 소형 체인톱에 의한 절단</li> <li>· 고압력 분출</li> <li>· 총상 또는 칼 자상</li> <li>· 유해 소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형식심사 절차 준수</li> <li>· 인증기관이 PPE의 기술설계를 심사하여 적합성을 평가</li> <li>- 심사완료 후</li> <li>①'내부 생산관리에 기초한 형식 적합성 및 무작위 제품 검사' 또는 ②'생산공정의 품질보증에 기초한 적합성 평가 중 선택</li> </ul>

### Ⅲ. 조사결과

#### 1

#### 설문조사

##### ■ 조사대상

- (조사대상) 구명복 및 어린이용물놀이기구(수영보조용품)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 556명
- (조사내용) 구명복 구입 및 이용 경험, 관련 정보 인지 여부 등
- (조사기간) 2020. 5. 29. ~ 6. 5.
- (조사기관) (주)코리아데이터네트웍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4.16\%p$

#### 가. 구입 경험

- (착용 대상) 설문대상 556명 중 328명(59.0%)은 만14세 이상(이하 성인용), 359명(64.6%)은 만13세 이하 사용 용도(이하 어린이용)로 구명복을 구입해 어린이용 제품 구매자가 약간 더 많았음(중복응답).

[구입 구명복의 착용 대상(중복응답)]

(단위 : 명, %)

구분	만13세 이하(어린이용)	만14세 이상(성인용)	빈도수
빈도 (비율)	359 (64.6)	328 (59.0)	556

- (구입처) 설문대상 556명 중 366명(65.8%)은 온라인 쇼핑몰, 190명(34.2%)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명복을 구입해 주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명복 구입처]

(단위 : 명, %)

구분	온라인쇼핑몰	오프라인 매장	계
빈도 (비율)	366 (65.8)	190 (34.2)	556 (100.0)

□ (구명복 구입 시 중요 고려사항) 구명복 구입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익사 등 사고예방 기능’이 346명(62.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영 보조 능력’ 69명(12.4%), ‘제품 치수’ 65명(11.7%) 등의 순이었음.

[구명복 구매 시 중요 고려사항]

(단위 : 명, %)

구분	익사 등 사고예방 기능	수영 보조 능력	제품 치수 (사이즈)	디자인	가격	기타	계
빈도 (비율)	346 (62.2)	69 (12.4)	65 (11.7)	43 (7.7)	31 (5.6)	2 (0.4)	556 (100.0)

○ (선택정보 수집처) ‘익사 등 사고예방 기능’을 중요하게 고려한 346명 중 167명(48.3%)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광고’를 통해 구명복 선택정보를 수집하였고, 다음으로 ‘블로그, SNS 등 소셜미디어’ 63명(18.2%), ‘오프라인 매장 직원의 설명’ 58명(16.8%) 등의 순이었음.

- 그러나 46명(13.3%)은 ‘정보를 얻을 곳이 없었다’고 답변하는 등 구명복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구명복 선택정보 수집처]

(단위 : 명, %)

구분	온라인 쇼핑몰 광고비교	블로그, SNS 등 소셜미디어	오프라인 매장 직원설명	얻을 곳 없음	언론 기사	정부부처 등의 홈페이지	기타	계
빈도 (비율)	167 (48.3)	63 (18.2)	58 (16.8)	46 (13.3)	6 (1.7)	3 (0.9)	3 (0.9)	346 (100.0)

○ (사고예방 구명복 구입현황) ‘익사 등 사고예방 기능’을 중요하게 고려한 346명 중 228명(65.9%)은 어린이용 구명복을, 204명(59.0%)은 성인용 구명복을 구입함(중복응답).

- 그러나 어린이용 구명복을 구입한 228명 중 106명(46.5%)은 익사 등 사고예방 기능이 있는 제품이 아닌 ‘수영보조용품’을 잘못 구입한 것으로 확인됨.

[제품 구매 시 사고예방 기능을 우선 고려한 소비자가 실제 구입한 구명복]

(단위 : 명, %)

구분	스포츠용 구명복	부력보조복	수영보조용품	기타*	계
성인용	106 (52.0)	93 (45.6)	-	5 (2.5)	204 (100.0)
어린이용	43 (18.9)	77 (33.8)	106 (46.5)	2 (0.9)	228 (100.0)

\* 기타 : 확인불가, 기억안남 등

- (구입 성인용 구명복의 종류) 성인용 구명복을 구입한 328명 중 163명 (49.7%)은 ‘부력보조복’을, 157명(47.9%)은 ‘스포츠용 구명복’을 구입하였음.

[구입 성인용 구명복의 종류]

(단위 : 명, %)

구분	부력보조복	스포츠용 구명복	기타*	계
빈도 (비율)	163 (49.7)	157 (47.9)	8 (2.4)	328 (100.0)

\* 기타 : 작업용구명, 확인불가, 기억안남 등

- (성인용 구명복의 용도) 성인용 구명복을 구입한 328명 중 192명(58.5%)은 ‘워터파크·수영장 등 물놀이’ 용도로 구입하였고, 다음으로 ‘해수욕장 물놀이’ 185명(56.4%), ‘강계곡 물놀이’ 136명(41.5%) 등의 순이었음(중복응답).

[성인용 구명복의 사용용도(중복응답)]

(단위 : 명, %)

구분	워터파크 수영장 물놀이	해수 욕장 물놀이	강계곡 물놀이	바닷가 낚시	바다 에서의 레저	보트 운전· 탑승	강 에서의 레저	기타	빈도수
빈도 (비율)	192 (58.5)	185 (56.4)	136 (41.5)	41 (12.5)	35 (10.7)	30 (9.1)	25 (7.6)	1 (0.3)	328

- (구입 어린이용 구명복의 종류) 어린이용 구명복을 구입한 359명 중 169명 (47.1%)은 ‘수영보조용품’을 구입하였고, 다음으로 ‘부력보조복’ 124명(34.5%), ‘스포츠용 구명복’ 63명(17.5%) 등의 순이었음.

[구입 어린이용 구명복의 종류]

(단위 : 명, %)

구분	수영보조용품	부력보조복	스포츠용 구명복	기타*	계
빈도 (비율)	169 (47.1)	124 (34.5)	63 (17.5)	3 (0.8)	359 (100.0)

\* 기타 : 확인불가, 기억안남 등

- (어린이용 구명복의 용도) 어린이용 구명복을 구입한 359명 중 281명 (78.3%)은 ‘워터파크·수영장 등 물놀이’ 용도로 구입하였고, ‘해수욕장 물놀이’ 187명(52.1%), ‘강계곡 물놀이’ 140명(39.0%) 등의 순이었음(중복응답).

[어린이용 구명복의 사용용도(중복응답)]

(단위 : 명, %)

구분	워터파크 수영장 물놀이	해수 욕장 물놀이	강계곡 물놀이	바닷가 낚시	바다 에서의 레저	보트 운전· 탑승	강 에서의 레저	기타	빈도수
빈도 (비율)	281 (78.3)	187 (52.1)	140 (39.0)	16 (4.5)	12 (3.3)	9 (2.5)	7 (1.9)	1 (0.3)	359

## 나. 구입 구명복의 적절성

□ (착용자의 수영 능력별) ‘스포츠용 구명복’은 부력이 높아 수영을 못 하는 사람도 사용 가능한 구명복이나, ‘부력보조복’은 부력이 낮아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구명복임. 또한, ‘수영보조용품’은 어린이가 물놀이를 하거나 수영을 배울 때 사용자의 부양을 도와 물에 익숙해지게 하거나 수영 동작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된 제품임.

○ (성인용) 성인용 구명복을 구입한 328명 중 93명(28.4%)은 부적절한 구명복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남.

- 성인용 ‘부력보조복’을 구입한 163명 중 93명(57.1%)이 수영 능력이 없음에도 수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착용하는 부력보조복을 구입함.

[성인 착용자의 수영능력별 구명복 구입 현황]

(단위 : 명, %)

구분	수영가능	수영불가	계
스포츠용 구명복	76 (48.4)	81 (51.6)	157 (100.0)
<b>부력보조복</b>	70 (42.9)	<b>93 (57.1)</b>	<b>163 (100.0)</b>
기타	4 (50.0)	4 (50.0)	8 (100.0)
계	150 (45.7)	178 (54.3)	328 (100.0)

○ (어린이용) 어린이용 구명복을 구입한 359명 중 90명(25.1%)이 부적절한 구명복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용 ‘부력보조복’을 구입한 124명 중 90명(72.6%)은 실제 착용하는 어린이가 수영 능력이 없음에도 ‘부력보조복’을 구입함.

[어린이용 착용자 수영능력별 구명복 구입 현황]

(단위 : 명, %)

구분	수영가능	수영불가	계
스포츠용 구명복	10 (15.9)	53 (84.1)	63 (100.0)
<b>부력보조복</b>	34 (27.4)	<b>90 (72.6)</b>	<b>124 (100.0)</b>
수영보조용품	28 (16.6)	141 (83.4)	169 (100.0)
기타	0 (0.0)	3 (100.0)	3 (100.0)
계	72 (20.1)	287 (79.9)	359 (100.0)

□ (구명복 사용 용도별) ‘스포츠용 구명복’은 보호시설이 있는 물(A형) 또는 약천후 조건(B형)에서 사용이 가능한 구명복이며, ‘부력보조복’은 가까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호지역의 물에서 사용하는 구명복임. 또한, ‘수영보조용품’은 수영장과 같이 물의 흐름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제품임.

○ (성인용) 성인용 구명복을 구입한 328명 중 137명(41.8%)이 부적절한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남.

- 성인용 ‘부력보조복’을 구입한 163명 중 137명(84.0%)은 보호시설이 없는 자연수역에서 사용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구입해 부적절하였음.

[성인용 구명복 사용용도별 구입 현황]

(단위 : 명, %)

구분	워터파크 · 수영장용*	자연수역용**	계
스포츠용 구명복	24 (15.3)	133 (84.7)	157 (100.0)
<b>부력보조복</b>	26 (16.0)	<b>137 (84.0)</b>	<b>163 (100.0)</b>
기타	0 (0.0)	8 (100.0)	8 (100.0)
계	50 (15.2)	278 (84.8)	328 (100.0)

\* 워터파크·수영장에서만 사용하는 응답자 수

\*\* 자연수역(해변, 강·계곡 등)에서도 중복으로 사용하는 응답자 수

○ (어린이용) 어린이용 구명복을 구입한 359명 중 192명(53.5%)이 부적절한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용 ‘부력보조복’을 구입한 124명 중 87명(70.2%)은 보호시설이 없는 자연수역에서 사용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구입해 부적절하였음.

- ‘수영보조용품’을 구입한 169명 중 105명(62.1%)도 자연수역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제품을 구입함.

[어린이용 구명복 사용용도별 구입 현황]

(단위 : 명, %)

구분	워터파크 · 수영장용*	자연수역용**	계
스포츠용 구명복	11 (17.5)	52 (82.5)	63 (100.0)
<b>부력보조복</b>	37 (29.8)	<b>87 (70.2)</b>	<b>124 (100.0)</b>
<b>수영보조용품</b>	64 (37.9)	<b>105 (62.1)</b>	<b>169 (100.0)</b>
기타	0 (0.0)	3 (100.0)	3 (100.0)
계	112 (31.2)	247 (68.8)	<b>359 (100.0)</b>

\* 워터파크·수영장에서만 사용하는 응답자 수

\*\* 자연수역(해변, 강·계곡 등)에서도 중복으로 사용하는 응답자 수

□ (체중별 부력) 스포츠용 구명복·부력보조복·수영보조용품은 착용자의 체중에 따라 최소부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체중 30kg 이하의 사람은 부력보조복을 착용하여서는 안 됨.

○ (성인용) 성인용 구명복을 구입한 328명 중 157명은 보유한 구명복의 부력 확인이 가능하였고, 이 중 45명(28.7%)이 착용자의 체중에 비해 부력이 낮은 부적절한 구명복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남.

[성인용 착용자의 체중과 구입한 구명복의 부력 비교]

(단위 : 명, %)

구분	제품부력 확인			제품부력 확인불가	계
	최소부력 이상	최소부력 미달	소계		
스포츠용 구명복	41 (50.0)	<b>41</b> <b>(50.0)</b>	82 (100.0)	75	157
부력보조복	71 (94.7)	<b>4</b> <b>(5.3)</b>	75 (100.0)	86	163
기타	-	-	-	8	8
계	112 (71.3)	<b>45</b> <b>(28.7)</b>	<b>157</b> <b>(100.0)</b>	169	328

○ (어린이용) 어린이용 구명복을 구입한 359명 중 289명은 보유한 구명복의 부력 확인이 가능하였고, 이 중 103명(35.6%)이 부적절한 구명복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남.

- 22명(7.6%)은 착용 어린이의 체중에 비해 부력이 낮은 구명복을 구입하였고, 81명(28.0%)은 착용 어린이의 체중이 30kg 이하임에도 착용이 불가능한 ‘부력보조복’을 구입함.

[어린이용 착용자의 체중과 구입한 구명복의 부력 비교]

(단위 : 명, %)

구분	제품부력 확인				제품부력 확인불가	계
	최소부력 이상 제품	최소부력 미달 제품	체중 30kg 이하 착용자	소계		
스포츠용 구명복	21 (70.0)	<b>9</b> <b>(30.0)</b>	-	30 (100.0)	33	63
부력 보조복	27 (24.8)	<b>1</b> <b>(0.9)</b>	<b>81</b> <b>(74.3)</b>	109 (100.0)	15	124
수영보조용품	138 (92.0)	<b>12</b> <b>(8.0)</b>	-	150 (100.0)	19	169
기타	-	-	-	-	3	3
계	186 (64.4)	<b>22</b> <b>(7.6)</b>	<b>81</b> <b>(28.0)</b>	<b>289</b> <b>(100.0)</b>	70	359

□ (구입 구명복 적절성 종합) 착용자의 수영능력, 사용용도, 체중별 부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구명복을 구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성인용 구명복 구입자 328명 중 196명(59.8%), 어린이용 구명복은 359명 중 237명(66.0%)이 부적절한 구명복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남.

○ (성인용) 성인용 ‘부력보조복’을 구입한 163명 중 155명(95.1%)이, 성인용 스포츠용 구명복을 구입한 157명 중에서는 41명(26.1%)이 부적절한 구명복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남.

[적절한 성인용 구명복 구입 여부(종합)]

(단위 : 명, %)

구분	적절한 구명복 구입*	부적절한 구명복 구입	계
스포츠용 구명복	116 (73.9)	<b>41</b> <b>(26.1)</b>	157 (100.0)
부력보조복	8 (4.9)	<b>155</b> <b>(95.1)</b>	163 (100.0)
기타	8 (100.0)	-	8 (100.0)
계	132 (40.2)	<b>196</b> <b>(59.8)</b>	328 (100.0)

\* 체중별 부력정보 미확인 응답자 수 포함

○ (어린이용) 어린이용 ‘부력보조복’을 구입한 124명 중 122명(98.4%)이, ‘수영보조용품’을 구입한 169명 중에서는 106명(62.7%)이 부적절한 구명복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남.

[적절한 어린이용 구명복 구입 여부(종합)]

(단위 : 명, %)

구분	적절한 구명복 구입*	부적절한 구명복 구입	계
스포츠용 구명복	54 (85.7)	<b>9</b> <b>(14.3)</b>	63 (100.0)
부력보조복	2 (1.6)	<b>122</b> <b>(98.4)</b>	124 (100.0)
수영보조용품	63 (37.3)	<b>106</b> <b>(62.7)</b>	169 (100.0)
기타	3 (100.0)	-	3 (100.0)
계	122 (34.0)	<b>237</b> <b>(66.0)</b>	359 (100.0)

\* 체중별 부력정보 미확인 응답자 수 포함

## 다. 구명복에 대한 인식

- (구명복 종류별 용도) 설문대상 556명 중 298명(53.6%)은 사용 장소 및 착용자 체중·수영능력에 따라 다른 구명복을 착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구명복 종류별 용도 인지 여부]

(단위 : 명, %)

구분	자세히 알고 있음	대략 알고 있음	전혀 모름	계
빈도 (비율)	20 (3.6)	238 (42.8)	298 (53.6)	556 (100.0)

- 또한, 445명(80.0%)은 구입처나 광고를 통해 구명복의 종류별 용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구명복 종류별 용도 정보 제공받은 경험 여부]

(단위 : 명, %)

구분	예	아니오	계
빈도 (비율)	111 (20.0)	445 (80.0)	556 (100.0)

- (부력보조복 용도) 설문대상 556명 중 456명(82.0%)은 ‘부력보조복’이 수영 가능한 사람이 보호시설이 있는 물에서만 사용하는 용도의 제품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부력보조복 용도 인지 여부]

(단위 : 명, %)

구분	예	아니오	계
빈도(비율)	100 (18.0)	456 (82.0)	556 (100.0)

- 또한, 475명(85.4%)은 몸무게 30kg 이하인 사람이 부력보조복을 착용할 경우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

\* 부력보조복은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이 착용하면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얼굴이 물속으로 향하는 등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부력보조복 착용 몸무게 제한 인지 여부]

(단위 : 명, %)

구분	예	아니오	계
빈도(비율)	81 (14.6)	475 (85.4)	556 (100.0)

- (수영보조용품 용도) 설문대상 556명 중 431명(77.5%)은 ‘수영보조용품’이 수영장과 같이 물의 흐름이 없는 장소에서만 사용해야 하고, 익사 방지 등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 아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수영보조용품 용도 인지 여부]

(단위 : 명, %)

구분	예	아니오	계
빈도(비율)	125 (22.5)	431 (77.5)	556 (100.0)

- (구입 의향) 설문대상 556명 중 각각 352명(63.3%), 333명(59.9%)은 ‘부력 보조복’과 ‘수영보조용품’의 용도를 인지한 후에는 해당 제품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

[용도 인지 후 재구매 의사 여부]

(단위 : 명, %)

구분	구매함	구매 안함	계
부력보조복	204 (36.7)	352 (63.3)	556 (100.0)
수영보조용품	223 (40.1)	333 (59.9)	556 (100.0)

- (표시광고 개선사항) 설문대상 556명 중 367명(66.0%)은 ‘구명복 용도 정보 (수영능력 및 보호시설 인근 여부 등) 제공’, 283명(50.9%)은 ‘구체적 착용 제한 사항정보(수상스키 등 레저활동 시 착용 가능 여부 등)제공’, 126명(22.7%)은 ‘회전 기능 정보제공’ 등의 순으로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중복응답).

[구명복 표시광고 개선 사항(중복응답)]

(단위 : 명, %)

구분	구명복 용도정보	구체적 착용제한 사항	회전 기능	체중별 적정 부력정보	유형별 성능 비교정보	안전인증 정보	취급 시 주의사항	빈도수
빈도 (비율)	367 (66.0)	283 (50.9)	126 (22.7)	125 (22.5)	53 (9.5)	37 (6.7)	8 (1.4)	556

### ■ 조사대상

- (조사대상) 네이버쇼핑 '스포츠/레저' 카테고리 내 '구명조끼' 검색 및 '물놀이용품-구명조끼' 카테고리 광고 500건
- (조사내용) 구명복 유형별 용도 및 부력 정보 제공 여부 등
- (조사기간) 2020. 5. 7. ~ 5. 27. / 3주

## 가. 구명복 광고 유형

- (광고 품목 유형) 조사대상 500개 광고 중 품명을 '구명조끼'로 광고하는 제품이 299개(59.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력보조복' 174개(34.8%), 어린이용 '수영보조용품' 27개(5.4%) 순이었음.

[광고 품목 유형]

품목	구명조끼*	부력보조복**	수영보조용품***	계
개수 (%)	299 (59.8)	174 (34.8)	27 (5.4)	500 (100.0)

\* 제품명을 구명조끼, 구명복 등으로 표기한 광고

\*\* 제품명을 부력보조복으로 표기한 광고

\*\*\* 제품명을 수영보조용품, 수영자켓 등으로 표기한 광고

- (구명조끼 광고 제품) '구명조끼'로 광고하는 299개 제품의 상당수가 용도나 기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없이 안전확인신고 또는 인증 품목과 다르게 '구명조끼'로만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가 '익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명복'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음.

- 299개 중 203개(67.9%) 제품은 광고 내 안전확인정보(안전확인신고번호)를 게시하고 있었으나, 제품안전정보센터<sup>2)</sup>를 통해 203개 제품의 안전확인정보를 확인한 결과, 110개(54.2%) 제품은 '부력보조복'으로, 55개(27.1%) 제품은 '수영보조용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이었고, 스포츠용 구명복으로 안전확인신고한 제품은 38개(18.7%)에 불과하였음.

2)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안전인증·리콜 정보 등 제품안전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www.safetykorea.kr)

[구명조끼 광고 제품의 안전확인신고 현황]

인증품목	안전확인신고 또는 인증 정보 게시				안전확인 신고 정보 미게시	총 계
	스포츠용 구명복	부력 보조복	수영 보조용품	소계		
개수	38	<b>110</b>	<b>55</b>	<b>203</b>	96	299
%	18.7	<b>54.2</b>	<b>27.1</b>	<b>100.0</b>	32.1	100.0
	67.9					

[구명조끼로 광고한 '수영보조용품' 예시]



- (부력보조복 광고 제품) '부력보조복'으로 광고하는 174개 제품의 상당수가 안전확인신고 품목과 다른 용도나 기능으로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의 오사용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74개 중 133개(76.4%) 제품은 광고 내 안전확인정보(안전확인신고번호)를 게시하고 있었으나,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133개 제품의 안전확인정보를 확인한 결과, 44개(33.1%) 제품은 '부력보조복', 7개(5.3%) 제품은 '스포츠용 구명복'으로 안전확인신고한 반면, 82개(61.7%) 제품은 '수영보조용품'으로 인증 받은 후 '부력보조복'으로 허위 판매하고 있었음.
- 어린이가 물놀이를 하거나 수영을 배울 때 사용자의 부양을 도울 목적으로 고안된 '수영보조용품'을 '부력보조복'으로 판매하고 있어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부력보조복 광고 제품의 안전확인신고 현황]

인증품목	안전확인신고 또는 인증 정보 게시				안전확인 신고 정보 미게시	총 계
	스포츠용 구명복	부력 보조복	수영 보조용품	소계		
개수	7	44	<b>82</b>	<b>133</b>	41	174
%	5.3	33.1	<b>61.7</b>	<b>100.0</b>	23.6	100.0
	76.4					

[자연수역에서 사용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수영보조용품' 광고 예시]



- (수영보조용품 광고 제품) '수영보조용품'으로 광고하는 27개 중 24개 (88.9%) 제품은 광고 내 인증정보(안전인증번호)를 게시하고 있었으며,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24개 제품의 인증정보를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수영보조용품'으로 인증 받은 것으로 나타남.

[수영보조용품 광고 제품의 인증현황]

인증 품목	인증정보 게시				인증정보 미게시	총 계
	스포츠용 구명복	부력 보조복	수영 보조용품	소계		
개수	-	-	24	24	3	27
%	-	-	(100.0)	(100.0)	11.1	100.0
	88.9					

- 그러나 '수영보조용품'으로 광고하는 27개 제품의 상당수가 '구명조끼', '부력보조복' 등으로 품목명을 혼용하거나 안전 확보 기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의 오사용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수영보조용품' 광고 현황]

구분	품목명 혼용 광고	안전성 오인 광고	수영보조용품 광고	총 계
개수 (%)	12 (44.4)	5 (18.5)	10 (37.0)	27 (100.0)

## 나. 안전인증 품목별 안전정보 제공 현황

- ▣ 조사방법 : 조사대상 500개 광고를 안전확인신고 또는 안전인증 품목별로 재분류하여 신고한 품목과 동일하게 광고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

인증 품목	안전확인신고 또는 인증 정보 게시				안전확인 신고 정보 미게시	총 계
	스포츠용 구명복	부력 보조복	수영 보조용품	소계		
개수	45	154	161	360	140	500

- (스포츠용 구명복) ‘스포츠용 구명복’은 수영을 못 하는 사람도 보호시설이 있는 물(A형) 또는 악천후 조건(B형)에서 사용이 가능한 구명복이나 수영이 가능한 사람의 경우 부력이 높아 수영에 방해가 될 수 있음.
- (품목 유형 고지) 안전확인신고 정보를 게시하고 있는 스포츠용 구명복 광고 (이하 조사대상 스포츠용 구명복) 45개 중 해당 제품의 품목 유형(A형/B형)을 고지하고 있는 광고는 3개(A형 1개/ B형 2개, 6.7%)에 불과하였음.

### ['스포츠용 구명복' 품목 유형 정보제공 여부]

(단위 : 개, %)

구분	고지	미고지	계
품목 유형 고지(A형/B형)	3 (6.7)	42 (93.3)	45 (100.0)

- (용도 및 장소 고지) 조사대상 ‘스포츠용 구명복’ 45개 중 ‘보호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할 것’ 또는 ‘악천후 조건에서 사용 가능’ 등 용도 및 장소를 고지하고 있는 광고는 3개(6.7%)에 불과하였음.

### ['스포츠용 구명복'의 용도 및 사용가능 장소 정보제공 여부]

(단위 : 개, %)

구분	고지	미고지	계
보호시설 인근용(A형) 또는 악천후 사용 가능(B형)	3 (6.7)	42 (93.3)	45 (100.0)

### ['스포츠용 구명복'의 품목 유형 및 용도 고지 광고 예시]

모델명			
종 류		A형, 팽창식	B형 (해변가 또는 악천후에 사용)
용 도		A형, 보호시설이 있는 물에서 사용	
판매원			150N
품목 유형 고지(A형)		품목 유형 고지(B형)	

- (수영 등 구조 활동 방해 주의사항 고지) ‘스포츠용 구명복’ 45개 중 부력이 커 수영 등 구조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는 광고는 없었음.

**[‘스포츠용 구명복’의 사용상 주의사항 정보제공 여부]**

(단위 : 개, %)

구분	고지	미고지	계
수영 등 구조활동 방해 여부	-	45 (100.0)	45 (100.0)

- (체중별 부력정보 고지) ‘스포츠용 구명복’ 45개 중 15개(33.3%) 광고는 체중별 부력정보 또는 해당 제품의 부력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착용자가 체중에 맞는 구명복을 선택하기 어려웠었음.

**[스포츠용 구명복의 체중 또는 부력정보 제공 현황]**

(단위 : 개, %)

구분	고지	미고지	계
부력 또는 체중별 부력정보	30 (66.7)	15 (33.3)	45 (100.0)

- (부력보조복) ‘부력보조복’은 수영이 가능한 사람이 보호시설 인근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며, 몸무게가 30kg 이하인 사람은 착용할 수 없음.

- (용도 및 장소 고지) 안전확인신고 정보를 게시하고 있는 ‘부력보조복’ 광고(이하 조사대상 부력보조복) 154개 중 ‘수영이 가능한 사람의 용도’임을 고지하고 있는 광고는 14개(9.1%), ‘보호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할 것’을 고지하고 있는 광고는 31개(20.1%)에 불과하였음.

- 용도 및 장소를 모두 고지한 광고는 14개(9.1%)에 불과해 ‘부력보조복’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부력보조복’의 용도 및 사용가능 장소 정보 제공 여부]**

(단위 : 개, %)

구분	고지	미고지	계
용도(수영이 가능한 사람용)	14 (9.1)	140 (90.9)	154 (100.0)
장소(보호시설 인근용)	31 (20.1)	123 (79.9)	154 (100.0)

[부력보조복의 용도 및 장소 고지 광고 예시]

**용도**  
 수영을 할수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호시설이 있는 물에서, 부피 또는 부력이 더 크면  
 사용자의 활동에 시상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더 위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사용

- (어린이 등 저 체중자 착용금지 고지) ‘부력보조복’ 154개 중 ‘체중 30kg 이하인 사람은 착용하지 말 것’을 고지하고 있는 광고는 29개(18.8%)에 불과하였음.
- 특히, 20개(13.0%) 광고는 체중 30kg 이하도 사용 가능함을 광고하고 있어 안전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높았음.

[저 체중자의 ‘부력보조복’ 착용금지 고지 여부]

(단위 : 개, %)

구분	고지	미고지	계
저 체중자 착용금지 고지	29 (18.8)	125 (81.2)	154 (100.0)

[저 체중자의 ‘부력보조복’ 착용 금지 고지 광고 예시]

<p><b>사용상의 주의사항</b></p> <p>-방석또는이와유사한용도로사용을금함</p> <p><b>-체중30kg이하인사람은사용하지말것</b></p>	<p><b>라이프자켓겸용 부력보조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즈 30kg(32cm X 59cm)</li> <li>▶ 재질 네오플렌, 플리에틸렌폼</li> <li>▶ 원산지 한국</li> <li>▶ 제품중량 400g</li> <li>▶ <b>착용가능체중 25kg 초과 30kg 이하</b></li> </ul> 
저 체중자 착용 주의	저 체중용 부력보조복 판매 광고

- (체중별 부력정보 고지) ‘부력보조복’ 154개 중 31개(20.1%) 광고는 체중별 부력정보 또는 해당 제품의 부력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착용자의 체중에 맞는 부력보조복을 선택하기 어려웠음.

[부력보조복의 부력 또는 체중별 부력정보 제공 여부]

(단위 : 개, %)

구분	고지	미고지	계
부력 또는 체중별 부력정보	123 (79.9)	31 (20.1)	154 (100.0)

- (수영보조용품) ‘수영보조용품’은 어린이가 수영장과 같은 물의 흐름이 없는 장소에서 수영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된 제품으로 물에서 안전을 확보할 목적·용도의 제품이 아님.
- (용도 및 장소 고지) 인증정보를 게시하고 있는 161개 ‘수영보조용품’의 광고 중 익사방지 기능 없음 등 ‘안전확보 목적이 아님’을 고지한 광고는 54개(33.5%), ‘수영장과 같이 물의 흐름이 없는 곳’에서 사용할 것을 고지한 광고는 27개(16.8%)에 불과하였음.
- 용도 및 장소를 모두 고지한 광고는 21개(13.0%)에 불과해 ‘수영보조용품’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었음.

**[수영보조용품의 용도 및 장소 정보 제공 여부]**

(단위 : 개, %)

구분	고지	미고지	계
용도(안전확보 목적 아님)	54 (33.5)	107 (66.5)	161 (100.0)
장소(수영장용)	27 (16.8)	134 (83.2)	161 (100.0)

**[수영보조용품의 용도 및 장소 고지 광고 예시]**

안전확보 목적 아님 고지	
수영장용 고지	

- (체중별 부력정보 고지) ‘수영보조용품’ 161개 중 27개(16.8%) 광고는 체중별 부력정보 또는 해당 제품의 부력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착용자의 체중에게 적합한 ‘수영보조용품’을 선택하기 어려웠음.

**[수영보조용품의 부력 또는 체중별 부력정보 제공 여부]**

(단위 : 개, %)

구분	고지	미고지	계
부력 또는 체중별 부력정보	134 (83.2)	27 (16.8)	161 (100.0)

- (안전확인정보 미게시 제품) 안전확인정보 미게시로 품목을 확인할 수 없는 140개 제품을 광고 내용을 바탕으로 ‘스포츠용 구명복’, ‘부력보조복’, ‘수영보조용품’로 분류한 후 안전정보 제공 여부를 조사함.

[안전확인정보 미게시 제품 품목 분류]

(단위 : 개, %)

구분	스포츠용 구명복	부력보조복	수영보조용품	계
개수 (%)	38 (27.1)	83 (59.3)	19 (13.6)	140 (100.0)

- \* (스포츠용 구명복과 부력보조복 구분) 성인용 제품 중 ‘선박용’, ‘물놀이용’, ‘팽창식’ 등 제품의 외관 및 광고에서 제공하는 부력 수치 등을 기준으로 구분
- \* (수영보조용품 구분) 수영보조용품 또는 어린이용 만13세 이하용으로 판매하거나 사이즈 및 디자인이 명백하게 어린이용인 제품의 광고

- (용도 및 장소 고지) 안전확인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광고 140개 중 용도 및 장소를 모두 고지하고 있는 광고는 8개(5.7%)에 불과하였음.

[안전확인정보 미게시 광고의 용도 및 장소 정보 제공 여부]

(단위 : 개, %)

구분	고지	미고지	계
스포츠용 구명복	2 (5.3)	36 (94.7)	38 (100.0)
부력보조복	1 (1.2)	82 (98.8)	83 (100.0)
수영보조용품	5 (26.3)	14 (73.7)	19 (100.0)
계	8 (5.7)	132 (94.3)	140 (100.0)

- (체중별 부력정보 고지) 안전확인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140개 중 54개 (38.6%) 제품은 광고를 통해 체중별 부력정보 또는 해당 제품의 부력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
- 특히, ‘부력보조복’ 광고 83개 중 ‘체중 30kg 이하인 사람은 착용하지 말 것’을 고지하고 있는 광고는 3개(3.6%)에 불과하였음.

[안전확인정보 미게시 광고의 부력 또는 체중별 부력정보 제공 여부]

(단위 : 개, %)

구분	고지	미고지	계
부력 또는 체중별 부력정보	54 (38.6)	86 (61.4)	140 (100.0)

## 다. 어린이용 구명복 광고 유형

- 조사대상 500개 중 234개 제품이 어린이용(성인겸용 포함)으로 광고하고 있었으며, 부력보조복 광고가 110개(47.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구명조끼 97개(41.5%), 수영보조용품 27개(11.5%) 순임.

[어린이용 구명복 광고 유형 품목]

(단위 : 개, %)

구분	구명조끼	부력보조복	수영보조용품	계
개수	97	110	27	234
(%)	(41.5)	(47.0)	(11.5)	(100.0)

- 어린이용 234개 중 215개(91.9%) 제품은 광고 내 안전확인정보(안전확인 번호)를 게시하고 있었으며,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215개 제품의 안전확인정보를 확인한 결과, ‘수영보조용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이 161개(7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력보조복’ 47개(21.9%), ‘스포츠용 구명복’ 7개(3.3%) 순임.

[어린이용 구명복 광고 제품의 안전확인신고 현황]

(단위 : 개, %)

인증 품목	안전확인신고 또는 인증 정보 게시				안전확인 신고 정보 미게시	총 계
	스포츠용 구명복	부력 보조복	수영 보조용품	소계		
개수	7	47	161	215	19	234
%	3.3	21.9	74.9	100.0	8.1	100.0
91.9						

- 안전확인정보와 광고내용 일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스포츠용 구명복 및 부력보조복 54개 제품은 일반 생활용품으로 안전확인신고 후 어린이용으로 광고·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용 스포츠 구명복(부력보조복 포함)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후 판매를 하여야 함.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및 부력보조복 안전확인신고 현황]

(단위 : 개, %)

품목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계
스포츠용 구명복	7	-	7
부력보조복	47	-	47
계	54	-	54

- 또한, ‘수영보조용품’으로 인증 받은 161개 중 137개(85.1%) 제품이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구명조끼’ 또는 ‘부력보조복’으로 광고·판매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였음.

[수영보조용품 인증 제품의 광고 유형]

(단위 : 개, %)

구분	구명조끼	부력보조복	수영보조용품	계
개수 (%)	55 (34.2)	82 (50.9)	24 (14.9)	161 (100.0)

[구명조끼 또는 부력보조복으로 광고하는 수영보조용품]



## 라. 구명복 선택정보 제공 현황

- 구명복은 사용 용도 및 환경, 착용자의 체중 및 수영능력 등에 따라 적정 기능을 보유한 구명복을 착용하여야만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음.
- (부력 선택정보) 조사대상 500개 광고 중 사용 용도 및 환경에 따른 구명복 종류별 부력 성능에 대한 선택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광고는 1개 (0.2%)에 불과하였음.

### [구명복 선택정보 제공 현황]

(단위 : 개, %)

구분	유형별 성능비교	회전성능	사용제한 사항 (견인스포츠 등)	계
개수 (%)	1 (0.2)	-	-	500 (100.0)

### [유형별 성능비교 정보 제공]

**LEVEL 50 I**

- EN 393
- 수영에 능한 자와 해안가까지 있는 사용자
- 24시간이 지나도 본래의 부력의 5%를 초과하여 감소하지 않음
- 50 KG
- 몸무게

**LEVEL 100 I**

- EN 395
- 보호수역, 가벼운 복장
- 24시간이 지나도 본래의 부력의 5%를 초과하여 감소하지 않음
- 100 KG
- 몸무게

**LEVEL 150 I**

- EN 396
- 대양, 악천 후 복장
- 24시간이 지나도 본래의 부력의 5%를 초과하여 감소하지 않음
- 150 KG
- 몸무게

**LEVEL 275 I**

- EN 399
- 대양, 극한 상태, 특수 보호복, 중장비
- 24시간이 지나도 본래의 부력의 5%를 초과하여 감소하지 않음
- 280 KG
- 몸무게

- (회전성능 등 선택정보) 구명복의 회전성능, 견인스포츠 사용제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광고는 없었음.

## 마. 결과 요약

- (부적합한 품목 광고) 안전확인정보를 게시하고 있는 360개 중 254개 (70.6%) 제품은 안전확인 또는 인증 품목과 다르게 제품을 광고하고 있었음.

### [안전확인품목 대비 광고품목 비교 현황]

(단위 : 개)

실제 광고 안전확인 또는 인증품목	스포츠용 구명복	부력보조복	수영보조용품	부적합 광고 (비율)
스포츠용 구명복	38	7	0	7 / 45 (15.6)
부력보조복	110	44	0	110 / 154 (71.4)
수영보조용품	55	82	24	137 / 161 (85.1)
계	203	133	24	254 / 360 (70.6)

- (안전정보 제공 미흡) 안전확인 품목별로 제품의 용도 및 장소, 체중별 부력정보,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모두 고지하고 있는 광고는 안전확인정보를 게시한 360개 중 26개(7.2%)에 불과하였음.

### [안전확인품목별 안전정보 제공 현황]

(단위 : 개, %)

구분	스포츠용 구명복	부력보조복	수영보조용품	계
모든 안전정보 제공 광고	0 (0.0)	9 (5.8)	17 (10.6)	26 (7.2)
조사대상	45 (100.0)	154 (100.0)	161 (100.0)	360 (100.0)

- (어린이용 구명복으로 부적합하게 광고한 제품) 안전확인정보를 게시하고 있는 어린이용 ‘스포츠 구명복’ 및 ‘부력보조복’ 광고 54개 전 제품이 일반 생활용품으로 안전확인신고 후 어린이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어린이용 ‘수영보조용품’ 161개 중 137개(85.1%) 제품은 인증 받은 내용과 달리 ‘구명조끼’ 또는 ‘부력보조복’으로 제품을 광고하고 있었음.

### 3

## 시험 검사

■ 조사기관 : 국가기술표준원

■ 시험대상 및 방법

- 시험대상 : 시중 유통 중인 '스포츠용 구명복'(11종), '부력보조복'(29종) 및 '수영보조용품'(15종)
- 시험항목 및 방법

시험항목	시험방법
부력테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확인 안전기준(부속서2) 제1부 스포츠용 구명복 및 제2부 부력보조복</li> <li>• 안전인증기준(부속서1) 제2부 수영보조용품(착용형)</li> </ul>

□ 조사대상 55개 중 '부력보조복' 3개(5.5%) 제품이 체중별 최소부력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였음.

#### [부력기준 부적합 제품]

모델명	제품정보		기준치	측정값
	인증번호	제품 사진		
WMS FLARE COMP VEST(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번호 : B025R0010-19001</li> <li>• 수입/판매원 : (주)오엔케이알트레이딩</li> </ul>		40N	37N
WMS FLARE COMP VEST(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번호 : B025R0010-19001</li> <li>• 수입/판매원 : (주)오엔케이알트레이딩</li> </ul>		40N	38N
WMS FLARE COMP VEST(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번호 : B025R0010-19001</li> <li>• 수입/판매원 : (주)오엔케이알트레이딩</li> </ul>		45N	41N

## IV.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 온라인 쇼핑몰 판매 구명복 광고의 개선 필요

- (문제점) 여름철 물놀이 또는 낚시 등 레저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매년 안전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익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복을 구입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음.
- (설문조사) 구명복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56명 중 366명(65.8%)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명복을 구입하였고, 제품 선택 시 ‘익사 등 사고 예방 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으나, 445명(80.0%)은 구입처나 광고를 통해 구명복의 종류별 용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온라인광고 실태조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 500개 중 299개(59.8%) 제품은 용도나 기능에 대한 설명 없이 ‘구명조끼’라는 명칭으로만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가 ‘익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명복’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음.
  - 안전확인정보(안전확인번호)를 게시하고 있는 360개 중 254개(70.6%) 구명복 제품은 안전확인신고 품목과 달리 제품을 광고하고 있었음.

[안전확인품목 대비 광고품목 비교 현황]

(단위 : 개)

실제 광고 안전확인 또는 인증 품목	스포츠용 구명복	부력보조복	수영보조용품	부적합 광고 (비율)
스포츠용 구명복	38	7	0	7 / 45 (15.6)
부력보조복	110	44	0	110 / 154 (71.4)
수영보조용품	55	82	24	137 / 161 (85.1)
계	203	133	24	254 / 360 (70.6)

- 안전확인 품목별로 제품의 용도 및 장소, 체중별 부력정보,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모두 고지하고 있는 광고는 인증정보를 게시한 360개 중 26개(7.2%)에 불과하였음.

[안전확인품목별 안전정보 제공 현황]

(단위 : 개, %)

구분	스포츠용 구명복	부력보조복	수영보조용품	계
모든 안전정보 제공 광고	0 (0.0)	9 (5.8)	17 (10.6)	26 (7.2)
조사대상	45 (100.0)	154 (100.0)	161 (100.0)	360 (100.0)

- 구명복은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품목으로 착용자의 수영능력·장소·체중 등 용도에 맞는 구명복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고의 개선이 필요함.

□ (개선방안) 구명복 온라인 광고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 개선

- 안전확인신고 및 안전인증 품목과 다른 광고의 개선

- (문제점) 구명복은 착용자의 수영능력 및 체중, 사용 장소 및 용도 등에 따라 적절한 구명복을 착용하여야만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음.
  - (설문조사) 구명복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설문대상 556명 중 298명 (53.6%)은 착용자의 수영능력 및 사용용도 등에 따라 구명복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
    - 556명 중 456명(82.0%)은 ‘부력보조복’이 수영이 가능한 사람이 보호시설이 있는 물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431명(77.5%)은 ‘수영보조용품’이 익사 방지 등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음.
    - 실제로 구입한 구명복이 착용자의 수영능력·사용 용도·체중별 부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성인용 구명복을 구입한 328명 중 132명(40.2%)이, 어린이용 구명복을 구입한 359명 중 122명 (34.0%)이 부적합한 구명복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에서는 부적합한 구명복 착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구명복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구명복 종류별 부력 및 사용장소, 회전성능 등 구명복의 기능과 사용제한 사항에 관한 정보 등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한 ‘구명복 선택 설명서’를 판매 시 의무적으로 제공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는 구명복에 대한 선택 정보 제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부적합한 구명복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실정임.
- (개선방안) 구명복 선택설명서 제공 의무화

- (문제점)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부력보조복’ 포함)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후 판매할 수 있으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관리되는 일반 ‘스포츠용 구명복’은 어린이용으로 판매할 수 없음.
- (설문조사) 설문대상 556명 중 359명(64.6%)이 어린이용 구명복을 구입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 중 187명(52.1%)은 ‘스포츠용 구명복’ 또는 ‘부력보조복’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남.
- (온라인광고 실태조사) 어린이용 234개 중 215개(91.9%) 제품이 광고 내 안전확인정보(안전확인번호)를 게시하고 있었고,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215개 제품의 안전확인정보를 확인한 결과, ‘수영보조용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이 161개(7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력보조복’ 47개(21.9%), ‘스포츠용 구명복’ 7개(3.3%) 순임.
- 안전확인정보와 광고내용 일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스포츠용 구명복’ 및 ‘부력보조복’ 54개 제품은 일반 생활용품으로 안전확인신고 후 어린이용으로 광고·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이번 실태조사 대상인 온라인광고 500개 제품 중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또는 ‘부력보조복’으로 안전확인을 받은 제품은 전무하여, 실제 구매가 불가능한 실정이었음.
- (개선방안) 어린이용 구명복의 판매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V. 조치계획

---

### 1 대정부 건의

- 국가기술표준원
  - ‘구명복 선택설명서’ 제공 의무화
  - 어린이용 구명복의 판매·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2 사업자 시정권고

- 통신판매증개업자 사업자정례협의체
  - 안전확인신고 및 안전인증 품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개선
  - 어린이용 구명복의 판매·광고 개선

### 3 기타 사항

- 소비자 정보 제공
  - 언론홍보 및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정보 제공